



2018학년도

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



2018. 1.

서울특별시교육청

[참여협력담당관]



사 업 시 행 전 검 토 항 목

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(비고 : 필요시 검토 내용 기재)

항 목		사 업 시 행 전 검 토 내 용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고
1	현 장 의 건 수 령	현장(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시민 등)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모니터링, 토론회, 공청회, 설문 조사 등	■	☐	
2	전 문 가 자 문	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관련 위원회, 지문단 의견 수렴 등	☐	■	
3	갈 등	이해 당사자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사립 교육 기관, 관계 단체 등	☐	■	
4	안 전	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시설 점검, 안전 관리 인력 확보 등	☐	■	
5	관 련 법 령	상위법이나 관련 법령, 조례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상위법, 관련 법령, 조례 등	■	☐	
6	공 직 선 거 법	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 수여, 기념품 제공 등	☐	■	
7	관 련 부 서	관련 부서, 기관과의 협조를 하였습니까? 예) 타부서(기관), 지자체 등	☐	■	
8	사 회 적 약 배 자 려	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, 여성, 장애인 등	■	☐	
9	학 교 업 무 부 담	학교 업무부담 유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	■	☐	
10	홍 보	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 자료, 기자 설명회 등	☐	■	
11	기 타				

차 례

I. 지원 개요	1
II. 지원 계획	3
III. 예산 현황	7
IV. 전년 대비 변동 사항	8
V. 향후 추진 일정	9
붙임	
1. 교육비 지원 범위	10
2. 교육급여와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	11

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

I 지원 개요

■ 목적 및 근거

- ◆ 목적 :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 및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
- ◆ 근거
 - 교육급여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
 - 교 육 비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 내지 10
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 내지 7

■ 지원 기간

- ◆ 교육급여 : 교육급여수급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안
- ◆ 교 육 비 : 2018년 3월 ~ 2019년 2월 (1년)
※ 단, 교육정보화 2018년 6월 ~ 2019년 5월 (대상 선정에 따른 지원 시기 조정)

■ 지원 대상

- ◆ 교육급여 :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
- ◆ 교 육 비 :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가구 학생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
교육비 항목별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¹⁾ 60% 이하) 등

1) 중위소득 :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,
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%는 4인 가구 기준 452만원 (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39호, 2017.8.4. 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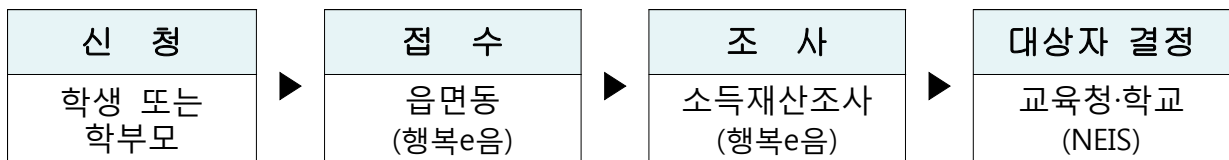
구분	2인	3인	4인	5인
중위소득 50% 이하	1,423,549원	1,841,575원	2,259,601원	2,677,627원
중위소득 60% 이하	1,708,258원	2,209,890원	2,711,521원	3,213,152원

교육비 지원 대상

지원 대상 유형	근거 법령 및 내용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※ 일반 모·부자 가정과는 다르며, 신청에 의한 법정 자격임
법정차상위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-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,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
소득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)	소득인정액이 해당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※ 교육비 항목별 상이함
난민인정자 또는 자녀	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지원 신청 절차

신청 절차



신청 절차별 업무 처리

 집중 신청기간 : 2018. 3. 2.(금) ~ 3. 23.(금) ※ 2017년 3월부터 상시신청

신청 방법

- ▶ (교육급여)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▶ (교육비)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

소득·재산 조사 및 통보 : 시·군·구청 통합조사팀

- ▶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‘소득인정액’ 산출
- ▶ 시·군·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⇨ 교육청·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

● **보장결정 및 대상자 선정** : 학교

- ▶ (교육급여)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
- ▶ (교육비) NEIS로 통보된 신청 학생의 ‘자격’ 및 ‘소득인정액’을 기준으로 교육비 항목별 대상자 선정

● **이의 신청**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시·군·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재조사

Ⅱ

지원 계획

항 목		지원 내용	지원 학년	지 원 대 상	비고
교육 급 여	부교재비	66,000원	초	교육급여수급자	국가의 의무 지출
		105,000원	중·고		
	학용품비	50,000원	초		
		57,000원	중·고		
	교과서대	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	고		
	입학금 및 수업료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	고		
교육 비	학 비	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	고1~3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% 이하	교육감 재량 사업
	급식비	학기중 평일 중식비	고1~3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% 이하 학교장 추천 대상자	
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연 60만원 이내	초1~고3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% 이하	
	교육정보화 지원	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	초1~고3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	기타수익자 부담경비	수련활동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	초4~고3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	

※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방법은 항목별 세부 지원 계획(추후 안내) 참고

교육급여 지원

지원 내용 : 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

구 분	지급 금액	지급 대상		지급 시기	지급 방법
부교재비	66,000원	초	인상	연 1회	수급자 계좌 직접 지급
	105,000원	중 · 고	인상		
학용품비	50,000원	초	신설	연 2회 분할 (1,3분기)	
	57,000원	중 · 고	인상		
교과서대	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	고		연 1회	학교로 지급
입학금 및 수업료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	고		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	

교육비 지원

학비 지원

지원 내용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(96,800원)

지원 기준

지원 기준	지원 범위			비 고
	입학금	수업료	학교운영지원비	
1순위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 급여수급자)	-	-	○	입학금및수업료 교육급여 지급
2순위.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1/2 지원	1/2 지원	○	입학금및수업료 1/2 구청 지급
3순위.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○	○	○	
기 타.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	○	○	○	

급식비 지원

지원 내용 : 학기중 평일 중식비 전액 (단, 비급식일 5,000원)

지원 기준

지원 기준	비 고
1순위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 급여수급자)	
2순위.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3순위. 특수교육 대상자	NEIS 교육비자료에 자료 부존재 별도명단 확인 필요
4순위.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
5순위. 학교장 추천 대상자	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천
기 타.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	
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 **지원 내용** :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·재료비 등 지원 (연 60만원 이내)

지원 기준

지원 기준	비 고
1순위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 급여수급자)	특별한 사유 없이 1강좌라도 출석률이 50% 미만인 경우 차기 강좌 지원 중지
2순위.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3순위.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
기 타.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	

교육정보화 지원

 **지원 내용** :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

지원 기준

지원 기준	비 고
1순위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 · 의료 급여수급자)	- 1가구(시설)당 1회선 지원 - 협약요금제 가입자만 지원
2순위.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
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지원 내용 :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

지원 기준

지원 기준	비 고
1순위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)	* 지원 단가 -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(378,000원 이내 실비) - 수련활동비 (126,000원 이내 실비)
2순위.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
3순위. 법정차상위대상자	

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

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

▶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

지원 기준		학 비		기타수익자 부담경비	비 고
		입학금/수업료	학교운영지원비		
입학전형 무 관	국민기초생활수급자	○	○	○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○	○	○	
	법정차상위대상자	○	○	○	
기회균등 전 형	중위소득 50%이하	○	○	○	
	중위소득 60%이하	○	-	-	일반고 수준 본인부담
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		-	-	-	법정 저소득 자격 없는 학생

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

- ▶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: 일반학교와 동일
- ▶ 교 복 비 : 300,000원 이내, 중·고 신입생(1학년)
- ▶ 앨 범 비 : 45,000원 이내, 중·고 예비 졸업생(3학년)
- ▶ 기숙사비 : 순수 기숙사비 50% + 조·석식비 전액

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

- ▶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

III

예산 현황

◆ 항목별 예산 현황

※ 본예산 기준

구 분		2018년		2017년		비고
		지원인원(명)	예산(천원)	지원인원(명)	예산(천원)	
교육급여	부교재비	59,494	5,495,808	70,915	2,921,698	국고 + 광역 + 기초 + 교육비 특별회계
	학용품비	59,494	3,256,352	48,078	2,601,020	
	교과서대	24,525	2,293,088	29,717	2,778,541	
	입학금 및 수업료	18,204	33,140,341	23,755	49,155,965	
교육급여 소계		44,185,589		57,457,224		
교육비	학 비	37,799	27,485,959	41,782	29,448,511	교육비 특별회계 100%
	급 식 비	42,164	29,911,205	45,460	32,371,638	
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89,299	22,504,348	95,663	25,830,010	
	교육정보화 지원	20,651	4,144,777	26,633	5,625,690	
	기타수익자부담경비	42,279	8,765,374	49,695	10,671,344	
교육비 소계		92,811,663		103,947,193		
합 계		136,997,252		161,404,417		

◆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현황 [44,185,589천원]

기 준		고등학교 입학금·수업료			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대		
		부담 주체	분담액 (천원)	분담 비율	부담 주체	분담액 (천원)	분담 비율
중위소득 40% 이상 ~ 50% 이하		교육청	14,185,788	43%	국가	6,627,149	60%
중위소득 40% 미만	부양의무자 있음						
	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	국가	11,372,732	34%			
		시	5,307,275	16%			
		구	2,274,546	7%			
		소계	18,954,553	57%	구	1,325,430	12%
합 계		33,140,341			11,045,248		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교육청, 국가, 시, 구에서 차등 분담

IV

전년 대비 변동 사항

◆ **교육급여 : 지원단가 상향** (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, 2017. 7. 28.)

구 분	2018년 (연간)		2017년 (연간)	
부교재비	초	66,000원	초·	41,200원
	중·고	105,000원	중·고	41,200원
학용품비	초	50,000원(신설)	초	-
	중·고	57,000원	중·고	54,100원
교과서대	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		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액	
입학금 및 수업료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	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	

◆ **교육비** [기타수익자부담경비 (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)] : **지원 확대**

● 지원 범위 및 선택권 확대

구 분	지원 금액	2018년	2017년
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	1인당 378,000원 이내 실비	초(4~6학년)·중·고 학년별 연 1회 (동학년 재학중 선택하여 연 1회 지원)	초·중·고 실시하는 학년 동일교 재학중 1회
수련활동비	1인당 126,000원 이내 실비	※ 초·중·고 최대 9회 지원	초(4~6학년)·중·고 실시하는 학년 동일교 재학중 1회

● 지원 대상 학교 확대 : **각종학교** (5교) 추가 (외국인학교 제외)

V

향후 추진 일정

월	추진 내용	담당	비고
1월	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	서울시교육청	
2월	교육급여 및 교육비 항목별 세부 지원 계획 안내	서울시교육청	
	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홍보		
3월	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 - 집중 신청 기간 : 2018. 3. 2. ~ 3. 23.	주민센터	
3~4월	교육지원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	서울시교육청	
	소득·재산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NEIS 통보	시·군·구청	
5월	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	학 교	
	교육비 지원 실시 및 기 납부금 환급		
6~11월	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실태 점검	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	상시화

붙임 1. 교육비 지원 범위

◆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

학교 급	학년	고교 학비		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 (인터넷 통신비)
		입학금	수업료	학교운영 지원비			
초	1	의무교육			무상급식	○	○
	2					○	○
	3					○	○
	4					○	○
	5					○	○
	6					○	○
중	1					○	○
	2					○	○
	3					○	○
고	1	○	○	○	○	○	○
	2	-	○	○	○	○	○
	3	-	○	○	○	○	○

◆ 자격별 교육비 지원 범위

순위	자격 구분	보유 자격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 (인터넷 통신비)
1	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	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	교육	교육	교육	생계·의료
2	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○	○	○	○
3		법정차상위 대상자	○	○	○	-
4	중위소득 기준 이하		60% 이하	60% 이하	60% 이하	-
5	학교장 추천		-	○	-	-
6	난민인정자		○	○	○	-

◆ 학교 유형별 교육비 지원 범위

분류	세부 분류	학비		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 (인터넷 통신비)
		입학금	수업료	학교운영 지원비			
특수 학교		무상 교육				-	○
고	일반고	면제	○	○	○	○	○
	자율고, 특목고	○	○	○	○	○	○
	방통고	면제	○	○	-	-	○
각종 학교	외국인학교	-	-	-	-	-	-
	대안학교	○	○	○	○	○	○
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		○	○	○	○	-	○

붙임 2. 교육급여와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

구 분	교육급여 지원	교육비 지원
공 통 점	- 사업대상 : 저소득층 학생 - 사업목적 : 교육격차 완화 및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- 지원절차 : 	
근 거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 내지 10
사업 성격	국가의 의무지출(권리성 급여)	시·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
지원 대상	중위소득 50% 이하 초·중고 학생	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- 중위소득 60% 이하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포함)
지원 내용	- 고교 학비(입학금+수업료) - 고교 교과서대 - 초·중·고 학용품비 - 초·중·고 부교재비	- 고교 학비(입학금+수업료+학교운영지원비) ※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- 고교 급식비 - 초·중·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- 초·중·고 교육정보화(인터넷 통신비) 지원 - 기타수익자부담경비
지원 방식	-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- 교육급여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- 학비 및 교과서비 - 교육청에서 학교로 송금	- 납부금을 3월에 선납부(납부유예), 대상자 선정(4~5월) 후 환급(면제·지원) - 법정자격 대상자는 납부 유예 가능 -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·지원 처리 -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 통신비)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지급

※ 참고 :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하며, 각각의 소득 인정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릅니다.

따라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중위소득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